

OECD 국가 규제비용 비교분석*

이혁우**

본 연구는 기존의 개별규제나 국가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을 확장하여,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한 것이다. 이런 연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Crain(2001)에 의해 고안된 규제비용 추정 모델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룩셈부르크, 영국, 미국, 호주, 노르웨이 등은 2003-2013년 사이에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을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나타났다.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멕시코, 터키, 포르투갈, 체코, 한국이 2003-2013년 간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비용의 개선을 이루어내었지만 2013년 현재 여전히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 수준이 최고수준에 있어서 규제개선 수요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우, 2003년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평균 이하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비용의 감소를 위한 노력도 평균이상을 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중 특히 독일의 경우, 2003년에서 2013년의 경제적 성과가 현격하게 개선된 국가로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규제개선의 효과도 반영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리스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규제비용 수준이 2003년 6위에서 2013년에는 3위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규제비용의 개선도 평균이하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에도 상대적으로 게을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리스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 성과가 낮으며 사회적 문제도 많은 국가로 평가되어 있는 실정이다.

주제어: 규제, 규제비용, OECD 국가 규제비용 비교, 베이스라인 모형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베이스라인 모형을 활용해 OECD 국가의 규제비용 수준을 추정하고 국가 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OECD에서 5년마다 발표하는 제조업 시장 규제지수(Product Market Regulation Index: PMR)를 이용해 2003년부터 2013년 사이 OECD 각 국가들의 규제부담의 수준을 총량으로 추정하여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이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의 규제개혁을 위한 상대적인 노력정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2304). 이 연구에 자문의견을 준 중소기업융복합팀 박재현 팀장과 연세대학교 BK21 Plus 정부역량과 정부의 질 사업단 윤성일 박사께 감사드린다.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hwlee@pcu.ac.kr).

사실 규제비용 분석은 규제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규제영향분석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규제에 대한 영향분석이 아니다. 그 중요성에 비해 국내, 국외 모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국가 수준의 규제비용분석에 대한 것이다. 이런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비용분석을 위해서는 타당한 모형을 개발하고,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표준비용모델,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표준비용모델의 경우 주로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에 국한된 분석이라는 점, 규제영향분석의 경우 개별규제의 효과에 대한 분석에 타당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 국가의 규제비용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국가 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규제수준의 변화를 토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규제비용을 국가단위로 분석해 비교하는 것은 규제관리의 성패가 국가경영의 성과로 직결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불합리한 규제를 경쟁적으로 개선해 보다 나은 국가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야 말로 보다 안전한 국가, 보다 부유한 국가, 보다 신뢰 높은 국가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규제준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높아진다. 나아가 이런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지켜진 규제가 실제 의도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역설도 발생한다. 안전을 위해 도입한 규제가 사회적 비용만 유발하고 정작 당초 의도한 사회적 안전은 담보하지 못한 예는 많다. 이렇게 되면 부담을 감수하면서 규제준수를 위해 애쓴 국민들은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 규제순응도 낮아져 이제 어떤 규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은 규제가 요구하는 부담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동태적이고 복잡한 상황에서 규제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케 해야 할 정부 기능의 장애가 반복된다.

규제관리를 소홀히 한 많은 국가는 이런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사회의 불합리에 대해 규제를 통해 어떻게는 개선해 보려하지만 정작 민간에서는 이런 규제를 신뢰하지 않는다. 규제정책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규제실패는 규제 그 자체의 불합리성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각 국가들이 자신들의 규제수준이 경쟁국들과 비교해 어떤지를 살피는데 소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OECD, Fraser Institute 등 여러 기구에서 각 국가의 규제수준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각 국가, 그리고 국민들이 국가의 규제관리수준을 보다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 국가들의 규제수준이 과연 해당 국가에 얼마의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비용이 국가마다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규제비용의 변화 또한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 연구를 통해 규제개혁과 규제개혁수요에 대한 OECD 국가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의

변화수준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성과와 추가적인 규제개선 수요에 대해서도 진단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과정에서 OECD 국가의 규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변수에 대한 연차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DB화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가 향후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우리나라 규제비용변화 추이와 그 경향, 그리고 OECD 국가와의 규제비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의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규제연구 분야의 다양한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 규제비용분석의 의의

1. 규제비용분석의 의미

규제는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institution) 중의 하나이다(최병선·이혁우, 2014; 이혁우, 2009). 제도는 한 사회에서의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작용, 즉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을 의미하고(North, 1992), 사람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Bardach et. al.(1982)에 의하면 개별 규제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어떤 규제에 대한 순응과 불응의 비율은 9:1 정도라고 했다. 국가가 어떤 규제를 도입했을 때 사람들은 가급적 지키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합리적인 규제는 한 사회를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규제는 사회구성원의 행위유인을 왜곡시켜 버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개인에게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사회전체로는 비효율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이병기, 2008). 규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다.

물론 규제가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 그 자체가 개선의 대상이자 문제는 아니다. 규제는 규제 대상에 대한 강제성에 기반 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규제를 정책수단으로 삼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비용에 비해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가급적 비용부담이 덜한 규제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제관리의 선진국은 이런 노력을 통해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추어왔다.

문제는 이런 규제에 의한 비용은 조세로 인한 부담과는 달리 가시성(visibility)이 낮다는 점이다(Salamon, 2002). 조세는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금전적인 의무로 그것이 얼마인지 개인은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물론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가시성이 높은 것처럼 조세체계 내에서도

그 가시성의 정도는 차이가 나지만 규제비용에 대한 가시성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 사업기회의 상실이나 지연,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비용발생 등은 좀처럼 파악되기 힘들고 체감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규제에서도 그 정치경제적 특성에 따라 규제부담이 보다 부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Wilson, 1980). 그러나 규제부담이 도드라지는 경우라도,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조세에서 국가가 부과하는 부담수준이 화폐단위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이유로 규제로 인한 비용은 보이지 않은 세금(invisible tax)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규제비용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시성이 낮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시도하려는 국가규제비용의 추정과 국가 간 비교의 의미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규제가 초래하는 부담이 얼마인지 국민들이 체감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범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보다는 개별사례의 분석과 제시를 통한 것이 낫고, 여기에 구체적인 국가의 규제비용분석이 포함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규제비용분석의 유형

규제비용분석은 주로 3가지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비용편익분석에 기반한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에 입각한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 분석, 국가의 규제비용 총량을 분석하는 베이스라인 분석(baseline analysis)이 그것이다. 이들 각각은 규제비용 추정수단으로 타당성을 입증 받은 것으로 각각 그 가치가 있다.

먼저 규제영향분석은 개별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데 가장 강력한 분석도구이다. 주로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규제개혁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규제영향분석의 기법은 개별규제의 개혁의 효과를 추정하는데도 활용된다. 이렇게 볼 때,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비용의 추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으로는 한 국가의 규제비용 수준 전체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개별규제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표준비용모델에 입각한 행정부담 분석은 1990년대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설계되어 적용되던 것을 독일 등 유럽의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오늘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석기법이다. 이 방법의 특징은 행정절차로 인한 부담을 분석하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럽국가에서 이처럼 행정절차에 국한된 분석에 한정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객관적

인 비용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은 그것의 범위를 어떻게 두는가, 규제로 인한 가치를 어떻게 간주하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 규제영향분석에서 도출된 분석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표준비용분석 역시 개별행정절차나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분석으로 역시 한 국가의 총량적인 규제수준을 분석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베이스라인 분석은 Crain(2001)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규제비용을 규제의 기회비용으로 정의하고, 이런 기회비용측면의 규제비용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규제의 기회비용이란 규제의 편익을 얻기 위해 민간경제가 감내하는 희생의 수준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김태윤, 1998). 이런 규제의 기회비용에는 규제로 인한 직접비용인 개인과 기업이 각종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자본과 노동력, 그리고 간접비용인 규제로 인한 생산성과 생산자본 투자 및 기술혁신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 모형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한 국가의 규제가 0인 상태를 상정한 규제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규제가 있는 현재의 상태와 비교하면 분석시점의 국가 전체의 규제비용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 규제비용분석의 대표적인 모형

	규제영향분석	표준비용모델	베이스라인 분석
대상	개별규제	개별규제	국가수준 규제비용수준
특징	피규제자와 규제비용단위를 활용해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	규제사무 처리에 따른 인력투입에 주목한 행정부담 추정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한 국가전체 수준 규제비용총량 분석
분석 방법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해 그 차이로 규제순비용(순편익)을 추정하여 개별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함	행정절차의 이행에 드는 인력과 소요 시간을 추정해 해당 노동의 연간비용을 근거로 표준비용을 도출함	규제가 0인 상태를 상정한 규제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규제가 존재하는 현재의 상태와 비교하여 규제비용을 도출

3. 선행연구의 검토

위에서 제시한 규제비용분석의 유형을 보면, 규제영향분석과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해 개별 규제가 유발하는 비용을 추정하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이들 방법론이 규제관리의 주요 선진국에서 신설·강화규제의 도입 시에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단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들 방법론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개별규제에 대한 연구들에서 활발하게 발견되며, 그 외 학술적인 연구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아래 〈표 1〉은 이들 연구들 중 비교적 최근의 내용으로 확인된 것을 소개한 것이다.

한편 국가수준의 총량적인 규제비용분석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국가수준의 규제비용분석이 규제영향분석과 표준비용모델과 다른 점은 각 연구마다 다른 모형을 채택하

고 있을 만큼 다양한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¹⁾ 그러나 이들 국가수준의 규제비용분석의 경향은 한 국가의 규제비용의 총량을 추정하거나, 한 국가 내 특정한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비용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Alesina et al.(2003)이 수송, 통신, 유틸리티 분야에서 규제가 투자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²⁾ Greenstone(2002)가 환경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것이 대표적이다.³⁾ Crain(2005)는 미국에서 규제로 인한 국가부담의 총량을 도출하였으며, 이동원 외(2008)의 경우, Crain의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규제부담수준을 추정하기도 했다.⁴⁾ Dawson과 Seater(2013) 역시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비용을 분석하면서 그 수준을 38.8조 달러로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규제가 초래하는 개별산업 혹은 국가전체의 비용수준에 대한 연구는 이외에도 무수히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연구경향을 분석해 보면, 국가 간 규제비용을 분석하여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여러 국가에서 규제개혁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제개혁의 상대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국가의 규제개혁에 대한 비교는 OECD나 Worldbank, Fraser Institute 등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규제지수의 변화로 제시되거나, 주요 개별국가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사례에 주목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영국에서 One-in, One-out와 같은 획기적인 규제개혁 방법론을 도입했다거나, 독일에서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이 꾸준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최병선·이혁우, 2013).

그러나 이런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규제비용수준을 총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 있다. 특히 이렇게 국가 간 규제비용의 수준과 그 변화 정도를 분석하고 비교하게 되면 1998년부터 2013년 사이의 약 15년간의 국가의 규제비용의 변화 수준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주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지난 15년 간 국가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입증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1998년 이후, OECD 국가를

1) 규제영향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고 있으며, 표준비용모델은 네덜란드에서 고안된 모형으로 행정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그러나 국가전체 수준의 규제비용의 추정은 GDP(1인당 GDP), 매출, 투자, 일자리,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설정하고, 이들 변수가 규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연구자마다, 포함시키는 변수 및 세부적인 회귀모형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그는 수송, 통신, 유틸리티 분야에서 규제가 투자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규명하면서, 규제가 40% 감소하면 투자가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규제가 초래하는 비용이 투자 2.5% 수준임을 제시한 것이다.

3) 그는 미국의 경우 대기오염규제로 750억불의 매출감소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4) Crain(2005)의 분석에서 미국의 경우, 규제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1인당 GDP가 1,343달러가 감소된다고 한다. 한편 동일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이동원 외(2008)의 연구에서는 이 값이 951달러이고 국가전체로는 78.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롯한 세계 각국은 매우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제도변화를 보여주었다. 1998년, 2008년의 두 차례의 강력한 경제위기는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실제 국가재정위기를 맞기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들 국가들 중 일부는 규제개혁과 같은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영국, 호주와 같은 국가는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국가 간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의 차이가 실제 규제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는 단순히 학술적 의미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의 객관적 성과를 확인하고, 사례연구를 통한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에서 스스로 자신의 규제개혁의 상대적 성과를 확인하여 규제개혁을 진단하고 전략을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표 2〉 규제비용분석에 대한 기존연구 경향과 본 연구의 위치

	개별규제에 대한 비용분석		국가수준 비용총량 분석	
	규제영향분석	표준비용모델	개별국가	국가 간 비교
대표 연구	Greenberg et al.(1999), Huyen, Pham & Pham Hoang Van(2010), Wu & Chan(2011), Posner(2003), 최무현(2005), 이삼주(2004), 이재림·이상민(2003) 김태현(2012) 등 다수	Falconer et al.(2001), SCM Network(2008), 김신(2005), 이종한(2006), 김상현(2007) 등 다수	Alesina et al.(2003), Greenstone(2002)Crain & Hopkins(2001), Crain(2005), Crain & Crain(2010), 이동원 외(2008), Dawson과 Seater(2013) 등 다수	본 연구

Ⅲ. 연구모형

1. 모형구축 전략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규제비용에 대한 횡단면적, 종단면적 연구이다. 횡단면적으로는 2003년, 2008년, 2013년 OECD 국가의 규제비용을 도출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 해당시기 한 국가의 규제비용 정도를 추정함과 동시에 OECD 국가들 간의 비교도 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3개의 시점에 대해 분석한 규제비용을 종단면적으로도 분석한다. 즉 한 국가의 규제비용의 변화정도에 대한 추적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규제비용의 변화정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OECD 국가의 규제비용 변화의 정도와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비교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분석모델의 도출

과 다른 하나는 분석에 필요한 국가별 규제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이다. 그런데 분석모형과 관련해서는 Crain(2001)이 제시한 모형으로 미국의회가 업계유일(Only Player in Town)로 평가한 베이스라인 모형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분석을 위한 자료의 확보가능성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간 규제수준에 대한 양적지표로, 대표적인 것이 1998년부터 OECD에서 5년 주기로 발표하는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Index)이다. 1990대부터 규제비용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에는 이런 자료의 확보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두 가지 전제의 충족에도 불구하고 위의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금까지 규제비용관련 연구를 보면,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국가 간 규제비용 수준을 종단적·횡단적으로 분석·비교하고 있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규제비용분석 모형을 제시한 Crain(2001, 2005, 2010)은 5년 주기로 규제비용을 분석해 내고 있지만 이는 OECD 국가 간 비교가 아닌 미국에 한정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모형을 채택한 분석이 이동원 외(2008)에서 한 차례 실시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 한정된 분석이었다. 즉 베이스라인 모형을 활용한 규제비용의 추정은 개별국가의 규제비용의 총량을 추정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국가마다의 규제비용을 모두 도출해 그 수준을 비교한 예는 없었으며, 나아가 여러 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 간 규제비용의 상대적 변화를 추정해 분석함으로써 국가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물론 이들 분석만으로도 한 국가의 규제비용의 정도를 추정해 내고 이를 정책적 자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국가 간의 규제수준의 비교를 통한 규제비용분석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별국가의 규제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하나는 일찍이 Crain(2001, 2005, 2010)이 설계하였고, 이를 원용해 삼성경제연구소(2007)에서 활용한 바 있는 규제비용분석 모델을 토대로 OECD 각 국가의 규제비용을 도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규제비용에 대해 국가별로 비교를 시도하기로 한다.

베이스라인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규제지수가 개별 국가의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분석을 통해 도출된 β 값을 활용하여 국가의 규제비용을 추정하게 된다. 이 때 규제가 없는 가상의 상태를 베이스라인으로 상정하고 현재의 규제가 있는 상태와 비교하게 된다. 즉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요인이 제거되었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 수준을 도출하고 이것과 현재의 규제상태에서의 국내총생산 수준과의 격차를 계산함으로써 한 국가의 규제비용을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Crain 2001, 2005, 2010).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규제비용을 분석하게 되면, 각 국가 간의 규제비용의 표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자료 수집을 통해 국가 간, 혹은 시점 간 규제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베이스라인 분석은 기본적으로는 규제가 시장경쟁을 억제하여 국민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Alesina et. al, 2005; Blanchard & Giavazzi, 2003). 규제는 시장 활동을 제약하여 투자 및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흔히 규제가 많으면 소득은 낮아지게 된다(최병선, 1992). 규제가 소득 및 생산성에 미치는 이런 효과는 이미 무수한 연구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진입규제를 하게 되면 경쟁이 줄어들고, 혁신의 유인이 낮아지는 소수의 보호기업에 의해 시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아지게 된다(Carree & Mijkamp, 2001, 김종호, 2008, 서영웅 외, 2012, 이혁우, 2013). 가격규제의 경우, 가격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유인을 왜곡시켜 소득을 감소시키게 되고, 각종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나 의사결정의 자율을 침해한 결과 역시 생산성의 감소를 도출하게 된다(최진욱, 2006). 따라서 베이스라인 분석에서는 규제가 없는 상상의 경우에 소득수준에서 현재의 규제수준에서의 소득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규제의 비용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2. 연구모델의 제시

본 연구에서 베이스라인 분석을 통한 규제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Crain(2001)에서는 베이스라인 모형을 제시하면서 규제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타당성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개방도, 인종다양성, 정부소비지출, 고등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동 모델에서도 Crain(2001)에서 제시된 후, 그의 연구와 이동원 외(2008)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그 분석의 타당성이 입증된 동 모형을 채택하기로 한다.

〈표 3〉 본 연구의 모델

$$1인당\ GDP = \alpha + \beta * PMR + \gamma * (통제변수) + \varepsilon$$

- 종속변수: 1인당 GDP(GDP based on PPP valuation, OECD)⁵⁾
- 독립변수: PMR: 제조업 규제지수(OECD)
- 통제변수: 무역개방도(Economic freedom Index, Fraser Institute)
인종다양성(La Porta et al., 1999)
정부소비지출(General government spending, Total, % of GDP, OECD)
고등교육수준(adult education level, Tertiary / Upper secondary / Below upper secondary, % of 25-64 year-olds, OECD)

5) GDP based on PPP valuation이란 '구매력평가(Purchasing-Power Parity)환율 기준 GDP'로 각국의 통화단위로 산출된 GDP를 단순히 달러로 환산해 비교하지 않고 각국의 물가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각국에서 생산되는 상품 서비스의 양과 물가수준까지 감안함으로써 소득을 단순 달러로 표시한

이들 모형에 활용한 구체적인 변수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는 OECD에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을 상대로 시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얼마나 시장경쟁을 저해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규제행정, 신규사업, 전문직, 운송, 소매와 유통 등에 관련된 규제를 다루게 된다. OECD에서는 이들 규제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객관적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공무원에 대해 상점 개점시간에 대한 규제유무, 정부규제가 금융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지 등 객관적이고 정량화 된 질문을 활용한다(OECD, 2007).

한편 종속변수인 1인당 GDP를, 통제변수로 무역개방도, 고등교육수준, 정부소비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위의 모형에서 소개한 자료를 활용할 것이며 분석대상 각 연도의 변수값을 활용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외 인종다양성은 La Porta et al(1999)가 The Quality of Government 연구에서 제시된 인종다양성 지표를 활용하였다. 이 지표값은 무작위로 두 명을 선택할 경우, 서로 다른 인종(언어)를 확률을 제시한 것이다. 인종의 다양성은 한 국가에 있어서 급변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대상인 4개 시점 모두에 대해 이들 지표를 반복해서 활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이들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한 이유는 이들 변수가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즉 무역개방도는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거래의 기회가 증가하여 그 결과 소득증가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Hall & Jones, 1997). 한편 인종이 다양한 국가일수록 인종간의 지대추구로 인한 성장저해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도로, 인프라, 교육 등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Alesina & Rodrik, 1994). 그 외 정부의 소비성 지출이 증가할수록 민간경제를 구축하는 효과를 초래한다(Barro, 1997). 그 외 높은 교육수준은 그 국가의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여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2003년, 2008년, 2013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수행하였다.⁶⁾ 연구대상을 이처럼 OECD에 한정된 이유는 PMR 지수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되었으며, 규제개혁의 관점에서도 이들 국가들이 다른 국가군에 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상대적인 노력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03년, 2008년, 2013년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1998년 자료를 제외한 이유는 1998년의 경우, 통제변수

GDP와 다르게 한 국가의 실질소득과 생활수준까지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수치로 PPP기준으로 조정된 GDP는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더 정확히 살펴볼 수 있다.

6)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OECD 국가는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이다.

중 무역개방도에 대한 변수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Fraser Institute에서 발표한 동 지표는 2000년 이전에는 5년마다 제시되었다. 이렇게 분석대상 기간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를 통해 2003년에서 2013년 사이의 OECD국가의 규제개혁에 대한 상대적 성과를 추정·비교할 수 있다는 의의는 여전하다.

3. 국가수준 규제비용의 도출

본 연구에서 규제비용의 추정은 위의 모형에도 도출된 β 값을 활용한다. 즉 위의 식에서 도출된 β 값의 의미는 규제지수 한단위의 변화로 인한 해당 국가의 1인당 GDP의 증감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회귀식을 이용하면 규제지수(PMR)이 0이 되었을 경우의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규제지수가 0이라는 것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 베이스라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β 값과 해당 국가의 규제지수(PMR)을 곱하면 해당 국가의 1인당 규제비용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1인당 GDP로 나누면 1인당 GDP 대비 규제비용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렇게 도출된 1인당 GDP 대비 규제비용을 해당 국가의 전체 GDP로 곱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전체 규제비용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각의 값을 OECD 국가별로 도출하고, 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수준의 규제비용의 도출 산식 역시 Crain(2001)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표 4〉 규제비용 도출 과정

규제수준	규제1단의 당 비용증감도	1인당 규제비용	1인당 GDP 대비 규제비용	국가전체 규제비용
① 규제지수(PMR)	② 규제 한 단위 비용(β)	③ = ①×②	④ = ③÷1인당 GDP	⑤=④×GDP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각각 2003년, 2008년 그리고 2013년도의 규제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시기 규제비용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값은 해당시기 국가의 규제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역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국가의 규제개혁 노력을 비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의 규제비용 도출과정에서 제시된 1인당 규제비용이 가장 중요하다. 각각 2003년, 2008년, 2013년에 대해 도출된 이들 값의 차이를 도출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규제비용의 변화정도를 추정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전체 규제비용보다 1인당 규제비용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별로 인구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도출해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VI. 분석

1.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에 활용한 OECD 국가는 34개 국가이며, 시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2008년과 2013년을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회귀모형에서 도출된 β 값을 활용해서 OECD 국가 간 및 개별국가에 있어서도 분석시점 간 규제비용의 변화를 표준화시켜 도출할 수 있어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아래와 같다.

〈표 5〉 기술통계값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GDP	102	34323.34	14251.61	10890.3	92914
PMR	97	1.604433	.3699042	.92	2.82
고등교육수준	93	29.09237	10.29276	9.7	52.97
정부지출	83	44.82783	6.864035	31.16	62.29
무역개방도	102	7.390392	.4790934	5.9	8.27
인종다양성	90	.128	.1072873	0	.38

본 연구에서 각 국가의 규제비용을 도출하여 비교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모형 1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패널 구조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합동 횡단면데이터(cross-sectional data)라고 가정하고 통합회귀분석(Pooled OLS model)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의 분석결과에 규제지수는 1인당 GDP에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에서 오차항의 동분산성(homoskedasticity)이 위배된 것일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LR 검정을 실시한 결과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 2와 같이 시계열데이터와 횡단면데이터로 합쳐진 패널데이터로 패널 일반화최소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 일반화최소자승법(FGLS)은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효율적인 추정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모형 2의 분석 결과 규제지수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OECD 국가의 경우, 규제부담이 높을수록 1인당 GDP에 부의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분석결과와는 이미, 선행연구 분석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기존의 무수한 분석결과를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규제개혁이 국가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각 국가들이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모형 1	모형 2
	(Pooled OLS)	(FGLS)
	1인당 GDP	1인당 GDP
PMR	-10,123.583 (6,806.979)	-9,071.681*** (2,193.816)
고등교육수준	188.653 (226.136)	-18.593 (114.942)
정부지출	-118.991 (248.455)	-59.920 (82.983)
무역개방도	5,519.904 (6,138.883)	8,583.919*** (2,260.370)
인종다양성	24,365.658 (15,366.012)	15,082.983** (6,424.459)
2008년 더미	7,438.216* (3,945.206)	6,596.793*** (1,389.177)
2013년 더미	7,652.492* (4,555.409)	8,347.176*** (1,635.516)
Constant	3,978.913 (58,479.974)	-15,254.684 (19,884.962)
R-squared	0.38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국가별 규제비용 분석

위의 회귀분석의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패널 일반화최소자승법을 적용한 회귀모형에서의 β 값을 활용하여 위의 〈표 4〉에서 제시한 모형을 적용해 OECD 국가의 규제비용을 분석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그 결과 규제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는 호주,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터키의 5개 국가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대한민국,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의 12개의 국가로 나타났다. 그 외 2008년 감소 후 2013년 다시 증가한 국

가는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스위스의 7개의 국가로 나타났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2003년 대비 2013년의 규제비용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증가 후 2013년에는 다시 감소한 국가는 일본,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5개 국가로 나타나고 있고, 2003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스페인은 2003년 대비 2013년의 규제비용이 낮게 나타나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규제비용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03년에서 2013년 기간 동안 국가전체의 규제비용에 있어서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을 제외하면 분석대상의 모든 국가에서 규제비용의 감소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런 분석대상 국가의 전체규제비용 수준은 그 자체로 각 국가의 규제비용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GDP와 인구의 차이 등 국가 규모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래와 같은 1인당 GDP 중에서 1인당 규제비용의 비중의 변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가 간의 표준화된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아래 <표 7>에서 2013년 기준, 국가 전체 규제비용은 독일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아이슬란드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로 독일이 규제부담이 가장 크고, 아이슬란드가 규제부담이 가장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독일과 아이슬란드는 경제규모와 인구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국가의 규제비용의 변화에 있어서도 해당 시기 경제적 성과에 비해 규제비용 수준을 분석해야만 해당 시기 해당 국가의 규제비용이 갖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해당 시기 규제비용 수준이 낮다고 해도, 해당 시기 국가의 경제적 성과 역시 낮다면, 여전히 해당 국가는 규제부담의 상대적 수준은 높지만, 반대로 규제비용 수준이 다른 시기,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해도, 해당 시기의 경제적 성과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면 규제비용의 상대적인 수준은 오히려 낮을 수 있는 것이다.

〈표 7〉 각 국가의 연도별 규제비용(국가전체 수준)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03년	2008년	2013년	경향성
Australia	239408.06	279491.0922	284139.1365	지속증가
Austria	113479.02	99725.00727	95205.94576	지속감소
Belgium	151018.12	141358.6307	146004.9473	감소 후 증가
Canada	465531.78	465293.7425	457265.5549	지속감소
Chile	-	239700.4249	239457.7454	감소
Czech Republic	175321.73	140145.0656	138910.7216	지속감소
Denmark	63863.988	64774.79204	66142.36103	지속증가
Estonia	-	15509.2037	15887.36128	증가
Finland	66583.052	63598.02303	64912.39651	감소 후 증가
France	918621.08	836355.7532	870761.5418	감소 후 증가
Germany	1281253.4	999857.4177	947467.417	지속감소
Greece	244257.46	217151.2112	179210.1213	지속감소
Hungary	175017.87	127088.425	122190.9968	지속감소
Iceland	4649.4897	4451.069906	4392.41446	지속감소
Ireland	54301.37	52865.52657	62000.68878	감소 후 증가
Israel	-	146336.9444	165309.7556	증가
Italy	882362.39	779678.6435	705133.573	지속감소
Japan	1613374.9	1659670.459	1644628.976	증가 후 감소
Korea	915290.02	898855.87	829331.9579	지속감소
Luxembourg	5564.1258	6056.123274	7380.532202	지속증가
Mexico	2076765.1	1943169.516	2022031.102	감소 후 증가
Netherlands	208585.51	144241.0631	145174.0266	감소 후 증가
New Zealand	45635.339	46371.4484	53483.86161	증가 후 감소
Norway	49145.907	65746.45941	68701.14999	지속증가
Poland	784022.67	666817.556	585874.4026	지속감소
Portugal	193182.53	163816.4126	129527.9054	지속감소
Slovak Republic	100690.26	77073.37632	66779.95783	지속감소
Slovenia	-	34214.78074	32870.45005	감소
Spain	634899.15	668044.4957	615268.2731	증가 후 감소
Sweden	117850.28	135139.2482	134638.1802	증가 후 감소
Switzerland	121727.65	106324.2011	115736.3398	감소 후 증가
Turkey	1490911	1738715.774	1993171.763	지속증가
United Kingdom	586272.25	662783.6193	630610.2009	증가 후 감소
United States	3428670.2	3068379.62	-	감소

따라서 위의 국가 전체 수준의 규제비용에 대한 총량수준의 분석에 비해 국가별 규제비용

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들 분석을 통해 국가규모, 즉 인구와 GDP에 따라 규제비용과 경제수준에 차이가 있어서 국가 간의 단순비교에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국가 내에서도 단순히 규제비용의 변화가 아닌, 규제비용이 경제성과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포함함으로써 규제비용 변화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도 GDP 등 경제성과에 변화가 있고, 이런 경제적 성과는 규제와 같은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규제비용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 경제성과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의 분석결과 2003년에서 2013년의 10년 간 모든 국가에서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의 비중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2003년 대비 2008년 감소하다 2013년은 다시 증가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2003년과 비교할 때, 2013년의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록 국가에 따라 2003년에서 2013년의 10년 사이에 전체 규제비용은 증가, 혹은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각 시기 1인당 GDP에 대한 1인당 규제비용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적어도 국가 전체 수준의 규제비용의 증감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국가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의 순위는 2003-2013년 간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즉 10년간 터키는 1위, 멕시코는 2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3년과 2008년 3위였던 폴란드는 2013년에도 4위로 대동소이하다. 그 외 헝가리, 그리스, 한국, 포르투갈 등 2003년 규제비용 수준이 10위 이내의 국가들이 2013년에도 여전히 10위 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체코가 8위에서 13위, 슬로바키아가 4위에서 11위로 개선되었지만 이 역시 전체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규제비용이 높은 수준에 속한다. 반면, 2003년 기준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20위 이상인 국가들 중에서 10년이 지난 2013년, 20위 이내로 진입한 경우는 단 하나의 국가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2003년 규제비용이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의 경우, 2013년에도 가장 낮은 국가이며, 이는 노르웨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규제관리의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규제관리를 철저하게 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각 국가들이 규제개선을 경쟁적으로 지속하여,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의 감소를 모두 이루어내고 있긴 하지만, 국가의 규제비용의 상대적 수준은 쉽게 변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점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만으로 다른 국가보다 훨씬 규제비용의 개선이 이루어진 상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규제개선은 그 효과가 매우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각 국가별로 비교할 때,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 순위가 현저하게 변화한 국가로는 네덜란드로 2003년 24위에서 2013년에는 32위로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역시 19위에서 29위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독일도 13위에서 25위가 되었다. 한편 이탈리아 역시 2003년 11위에서 2013년 18위로 규제비용의 국가 간 상대적인 순위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각 국가의 연도별 규제비용수준 변화(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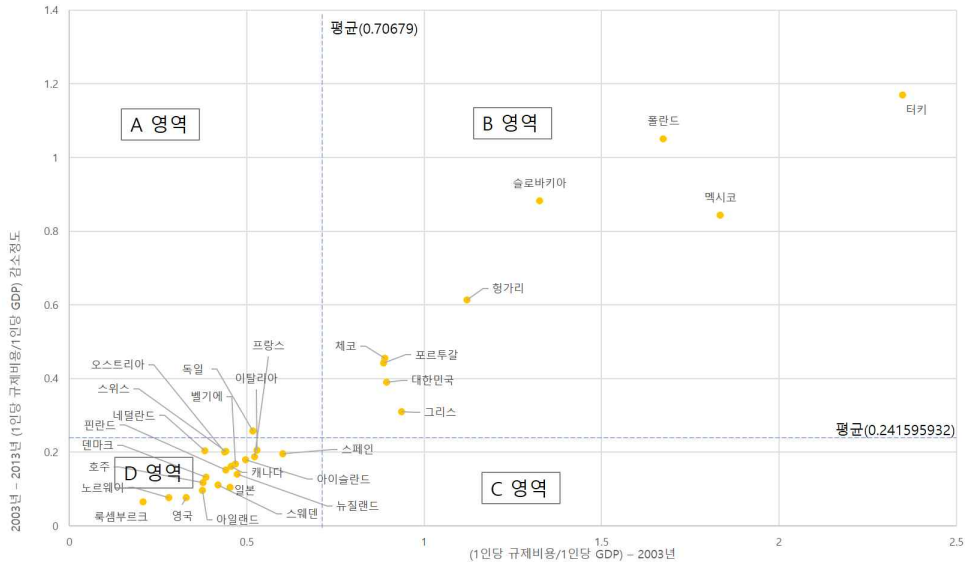
(단위: %, 위)

국가	2003년		2008년		2013년		경향성
	변화율	순위	변화율	순위	변화율	순위	
Australia	37.6371	25	32.8273	23	25.8573	26	지속감소
Austria	43.6825	21	29.1876	27	23.528	30	지속감소
Belgium	46.867	16	34.612	21	30.0487	21	지속증가
Canada	45.6574	17	34.7478	20	29.4959	22	지속감소
Chile	-	-	87.6038	4	61.0172	5	감소
Czech Republic	88.8298	8	48.5726	13	43.3371	13	지속감소
Denmark	38.4849	23	28.5644	28	25.2098	27	지속증가
Estonia	-	-	51.179	12	43.938	12	감소
Finland	44.0686	20	29.9463	25	28.9021	23	지속감소
France	52.229	12	36.9547	17	33.4119	16	지속감소
Germany	51.7667	13	32.0206	24	25.9738	25	지속증가
Greece	93.643	6	63.5283	7	62.624	3	지속감소
Hungary	112.0662	5	61.5002	8	50.6894	8	지속감소
Iceland	49.7142	14	32.8578	22	31.8236	19	지속감소
Ireland	37.4966	26	26.6021	29	27.9102	24	감소 후 증가
Israel	-	-	73.0441	5	59.9298	6	감소
Italy	52.9425	11	37.4371	16	32.4003	18	지속감소
Japan	45.2104	18	38.6915	15	34.7758	15	지속증가
Korea	89.4122	7	63.9432	6	50.4221	9	지속감소
Luxembourg	20.7675	30	14.4785	34	14.2547	33	지속감소
Mexico	183.4871	2	118.4199	2	99.1508	2	지속감소
Netherlands	38.1455	24	19.1319	33	17.7516	32	지속증가
New Zealand	47.2886	15	36.4556	18	33.2587	17	지속감소
Norway	27.9417	29	22.3563	31	20.1986	31	지속감소
Poland	167.4364	3	95.519	3	62.3075	4	지속감소
Portugal	88.6329	9	58.2602	10	44.3964	10	지속증가
Slovak Republic	132.5332	4	60.4768	9	44.2191	11	지속감소
Slovenia	-	-	57.1391	11	54.0326	7	감소
Spain	60.0667	10	43.4425	14	40.4806	14	지속감소
Sweden	41.8022	22	35.0214	19	30.7057	20	지속증가
Switzerland	44.0993	19	26.5739	30	23.9299	29	지속감소
Turkey	234.9087	1	153.8024	1	117.8794	1	지속감소
United Kingdom	32.8746	27	29.7311	26	25.2035	28	지속감소
United States	29.7869	28	20.847	32	-	-	감소

3. 국가 간 규제개선 노력정도

한편 아래의 <그림 1>은 분석대상 국가들이 2003년 대비 2013년 규제비용의 상대적인 감소정도를 비교한 것이다.⁷⁾ 분석결과 먼저 이미 제시한 것처럼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은 분석대상 기간에 모든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 결과 아래에서도 확인하듯이 모든 국가가 1사분면에 위치해 있다. 만약 2003년 대비 2013년에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높은 국가가 있다면 이들 국가의 값은 2사분면에 위치했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의 변화(2003-2013)



한편 아래의 그래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A 영역에 위치한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B영역과 D영역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B영역의 경우, 2003년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평균이상인 국가군이지만, 2003년에서 2013년 규제비용의 감소 역시 평균이상을 보인 국가에 해당한다. 즉 비록 2003년의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비용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2003-2013년 기간 규제비용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를 의미한다. 특히 터키의 경우, 2003년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가장 높았지만, 2003년에서 2013년 사이 이 비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들 국가군에는 터키, 폴란드, 멕시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포르투갈, 대한민국, 그리스가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군 중에서도 슬로바키아와

7) 그래프에 대한 자료는 부록에 첨부함.

멕시코의 경우, 2003년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은 멕시코가 훨씬 높았음에도 동일 기간 규제비용의 감소수준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슬로바키아가 높았다. 두 나라만을 비교해 보면,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더 높은 국가에서 오히려 규제개선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체코, 포르투갈, 대한민국, 그리스에서도 발견된다. 이들 국가는 2003년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3년에서 2013년 사이의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의 감소는 차이를 보이는데 체코, 포르투갈, 대한민국, 그리스 순으로 규제비용의 감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D영역의 경우, 2003년 당시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들로, 2003년에서 2013년 사이에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의 감소도 평균보다 낮은 국가들이다. 규제비용이 낮은 국가의 경우, 추가적인 규제개선에 따른 한계적인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 중 룩셈부르크의 경우, 2003년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3-2013년 사이의 규제비용의 감소수준도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페인의 경우, 2003년 시점 D영역 국가군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높은 국가였으나 2003-2013년 사이의 규제비용의 개선은 가장 높게 이루어진 국가로 판단된다. 대체로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이들 국가군에서 규제비용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A영역의 국가로는 독일이 발견된다. A영역의 경우, 2003년 시점에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평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2003-2013년 사이에 규제비용의 개선을 평균이상 한 국가를 말한다. 이는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상의 규제개선을 한 것으로 가장 모범적인 국가를 의미한다. 더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규제비용이 낮아질수록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국가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위의 <그림 1>에서 규제비용이 낮은 국가의 경우, 추가적인 규제개선과 그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규제개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의 경우, 규제개선 과제의 발견, 규제개선 과제의 추진과 그로 인한 가시적 효과를 연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청소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집일수록 적은 노력으로 청소를 한 변화의 효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깨끗한 집일수록 청소로 집이 더 많이 정리되었다는 가시적인 효과를 발견하기 힘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국가 간의 규제비용 수준의 상대적인 차이를 고려한 분석을 위해, 아래 <그림 2>와 같이 2003년-2013년의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의 변화가 해당 국가의 2003년의 규제비용에 비해 어느 정도 인지, 즉 2003-2013년 사이의 규제비용 변화수준을 해

당 국가의 2003년 원래 규제비용을 고려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렇게 되면, 비록 2003년-2013년 사이의 동일한 규제개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별 국가마다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⁸⁾ 그리고 그 양상은 위의 <그림 1>과는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먼저 A영역에 있는 국가는 규제관리의 선진국이다. 이들은 2003년 시점에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평균보다 이미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2013년의 10년 동안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의 감소율이 평균이상인 국가들이다. 즉 이들 국가는 이미 규제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평균이상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규제비용이 낮아질수록 규제개선에 더 많은 노력이 든다는 측면에서 이들 국가는 규제관리의 모범적인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국가군에는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있다.

B 영역에 있는 국가는 2003년 시점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평균보다 높은 국가였으나 2003-2013년 사이에 규제비용의 개선을 평균보다 높게 이루어낸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비용의 감소를 위해 지난 10년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국가 중 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경우, 2003년 대비 2013년의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60%이상 감소한 국가이며, 헝가리의 경우 약 55%, 체코와 포르투갈, 터키 역시 50% 정도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우, 그동안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 시점에서 1인당 규제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규제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이다. 즉 2013년 기준, 1인당 규제비용에 있어서 터키는 1위, 멕시코는 2위, 폴란드 4위, 한국 9위, 포르투갈 9위, 헝가리 8위, 슬로바키아 11위, 체코 13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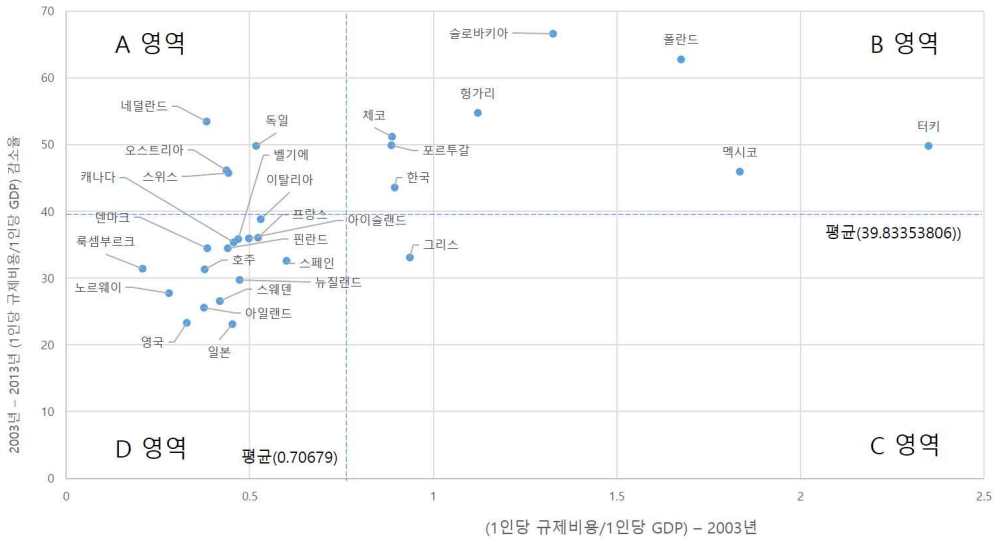
C영역의 국가의 경우, 규제관리의 후진국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2003년 시점에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평균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2013년 사이에 규제비용의 감소율도 평균이하인 국가로, 규제개선에 관심을 덜 가진 국가이다. 아래 <그림 1>에서 이들 국가로는 그리스가 발견된다. 그 결과 그리스의 경우, <표 8>에서 확인되듯이 2013년 1인당 규제비용 역시 분석대상 국가 중 3위이며, 유럽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다.

D영역의 국가의 경우, 2003년 시점에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이나 2003-2013년 사이의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의 감소율은 평균보다 낮은 국가들이다. 선진적인 규제관리국일수록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의 효과가 체감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는 꾸준한 규제관리를 통해 현재 수준의 규제를 유지 혹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 또한 개개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

8) 그래프에 대한 자료는 부록에 첨부함.

는 불합리하지만 개선이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의 변화(2003-2013)



V. 결론

규제가 한 사회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따른 국가의 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기존의 연구들을 개별규제의 효과분석이나, 개별국가의 규제비용을 추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런 개별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가 보다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개별 규제나 국가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을 확장하여,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한 것이다. 이런 연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Crain(2001)에 의해 고안된 규제비용 추정의 모델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룩셈부르크, 영국, 미국, 호주, 노르웨이 등은 2003-2013년 사이에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을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나타났다.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멕시코, 터키, 포르투갈, 체코, 한국이 2003-2013년 간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비용의 개선을 이루어내었지만 2013년 현재 여전히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 수준이 최고수준에 있어서 규제개선 수요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우, 2003년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

이 평균 이하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비용의 감소를 위한 노력도 평균이상을 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중 특히 독일의 경우, 2003년에서 2013년의 경제적 성과가 현격하게 개선된 국가로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규제개선의 효과도 반영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리스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규제비용 수준이 2003년 6위에서 2013년에는 3위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규제비용의 개선도 평균이하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에도 상대적으로 게을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리스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 성과가 낮으며 사회적 문제도 많은 국가로 평가되어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들의 규제비용의 상대적 수준이 경제적 성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개별 국가별로 사례연구를 실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에 국한된 분석결과를 제시해 보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의 상대적 순위가 2003년 7위에서 2013년 9위로 여전히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에는 오히려 6위로 악화되기도 했다.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측면에서 보면, 2003년에서 2013년 사이에 비록 분석대상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루어 내었지만 크게 평가할 만한 상황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은 2003년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평균이상의 국가 중 그리스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규제개선을 이루어 낸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지난 2003년 이후,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종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등 규제개선에 있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과제에 대한 불합리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끝으로 이 연구를 마무리 하며, 밝혀줄 것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각 국가의 시기별 규제비용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국가들 사이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형이 규제수준이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β 값을 추정하고, 이 값을 적용해 각 국가, 각 년도의 상대적인 규제비용을 도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각 국가의 규제비용의 상대적 수준과 순위만을 들어 분석을 실시하고 규제비용을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규제비용이 각 국가의 실제 규제비용으로 제시하거나, 국가 간 상대적 비교를 전제하지 않고, 특정국가의 규제상태를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규제 수준과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당장 2018년 이면 OECD에서 각 국가별 규제지표(PMR)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추가해 분석을 할 경우,

2018년까지 각 국가의 규제개선을 위한 상대적인 성과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김신(2005),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의 측정: 모형 및 적용방안, 한국행정학회 2005학년도 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종호(2008), 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규제연구」 제17권 제2호.
- 김태윤(1998),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기법, 한국행정연구원.
- 김태현(2012), 산업규제개선에 지방의 기업유치 및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 삼성경제연구소(2008),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 Issue Paper.
- 서영웅·최석준·이시욱(2012), 정부의 지역입지규제는 기업경영 및 혁신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평택과 천안 지역 기업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제15권 제3호.
- 이병기(2008),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규제연구」 제17권 제2호.
- 이삼주(2004),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영향분석: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3호.
- 이종한(2006),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 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이재림·이상민(2003), 교통요금 규제의 운임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규제연구」 제12권 제1호.
- 이혁우(2009), 규제의 개념에 관한 소고, 「행정논총」 제47권 제3호.
- _____(2012),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 제21권, 제2호.
- _____(2014), 한국식 규제비용총량제의 운영모델 개발, 전국경제인연합회.
- _____(2013),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교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1호.
- 최무현(2005),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강화의 규제영향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제15권 제1호.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법문사.
- 최병선·이혁우(2014), 한국 규제개혁시스템 혁신방안, 규제연구 제23권.
- 최진욱(2006),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15권 제1호.
- Alesina et al.(2005), Regulation and Investment,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4).
- Alesina A. & Rodrik, D.(1994), 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2)
- Bardach, E., & Kagan, R. A. (1982). Going by the book: The problem of regulatory unreasonablenes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Barro, R.(1997),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Cambridge: The MIT Press.
- Blanchard, O. & Giavazzi, F.(2003), Macroeconomic Effects of Regulation and Deregulation in Goods and Labor Marke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
- Carree, M. & J. Nijkamp(2001), Deregulation in Retailing: The Dutch Experience, Journal of Economics

- and Business 53.
- Crain, N. V. & Crain, W. M.(2010), The Impact of Regulatory Costs on Small Firms, The Office of Advocacy,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Crain, W. M. & Hopkins, T. D.(2001), The Impact of Regulatory Costs on Small Firms, The Office of Advocacy,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Crain, W. M.(2005), The Impact of Regulatory Costs on Small Firms, The Office of Advocacy,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Epstein, Richard A.(1995), Simple Rules for a Complex World,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 Greenberg, Joshua, Mark Herrmann & Bill Natcher(1999), Impact Analysis of Changes in Fishery Regulations in the Norton Sound red king crab fishery, *Artic*, Vol.52(1)
- Hall, R. & Jones, C.(1997), Levels of Economic Activity Across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87(2).
- Hopkins, T.(1992), Costs of Federal Regulation, *Journal of Regulation and Social Costs* 2(1).
- _____.(1998), Regulatory Costs in Profile, *Policy Sciences* 31(4).
- Huyen, Pham & Pham Hoang Van(2010), The Economic Impact of Local Immigration Regulation: An Empirical Analysis, *Cardozo Law Review*, Vo:l 12(2)
- La Porta, et al.(1999), The Quality of Govern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5.
- North, Douglass C.(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sner, Eric A(2003), Transfer Regulations and Cost-Effectiveness Analysis, *Duke Law Journal*, Vol 53.
- Salamon, Lester M.(2002), "The New Governance and the Tools of Public Action: An Introduction",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 SCM Newwork(2008), *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ual*.
- Sunstein, Cass R.(1997), "Paradoxes of the Regulatory State", *Free Markets and Soci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U.S: New York.
- Wilson, James Q.(1980), *The Politics of Regulation*, New York: Basic books, Inc.
- Wu, Yu-Ta & Kuei-Yuan, Chan(2011), Optimal Design and Impact Analysis of Urban Traffic Regulations under Ambient Uncertainty, *Stochastic Environmental Research and Risk Assessment*, Vol 25(2).

〈부록 1〉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의 변화

	2003년(A)	2008년	2013년(C)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변화 (D=A-C)	2003년 각 국가 규제비용 수준 대비 10년간 변화수준(%) (E=D/A*100)
Australia	0.376371	0.328273	0.258573	0.117798269	31.29842682
Austria	0.436825	0.291876	0.23528	0.201545047	46.13866317
Belgium	0.46867	0.34612	0.300487	0.16818329	35.88523126
Canada	0.456574	0.347478	0.294959	0.16161494	35.39734411
Czech Republic	0.888298	0.485726	0.433371	0.454926581	51.21328947
Denmark	0.384849	0.285644	0.252098	0.132751204	34.49438259
Finland	0.440686	0.299463	0.289021	0.151664794	34.41564803
France	0.52229	0.369547	0.334119	0.188171133	36.02808471
Germany	0.517667	0.320206	0.259738	0.257929127	49.82526077
Greece	0.93643	0.635283	0.62624	0.310190684	33.12480429
Hungary	1.120662	0.615002	0.506894	0.613768586	54.76838382
Iceland	0.497142	0.328578	0.318236	0.178905749	35.98687699
Ireland	0.374966	0.266021	0.279102	0.095864182	25.56611206
Italy	0.529425	0.374371	0.324003	0.205422153	38.80099932
Japan	0.452104	0.386915	0.347758	0.104345897	23.08005728
Korea	0.894122	0.639432	0.504221	0.389900745	43.60709958
Luxembourg	0.207675	0.144785	0.142547	0.065127461	31.36029471
Mexico	1.834871	1.184199	0.991508	0.843362544	45.96305277
Netherlands	0.381455	0.191319	0.177516	0.203939063	53.46351025
New Zealand	0.472886	0.364556	0.332587	0.140298433	29.66856179
Norway	0.279417	0.223563	0.201986	0.077430475	27.71147397
Poland	1.674364	0.95519	0.623075	1.051288574	62.78735398
Portugal	0.886329	0.582602	0.443964	0.44236454	49.90977217
Slovak Republic	1.325332	0.604768	0.442191	0.883141828	66.63549235
Spain	0.600667	0.434425	0.404806	0.195860609	32.60719161
Sweden	0.418022	0.350214	0.307057	0.11096544	26.5453459
Switzerland	0.440993	0.265739	0.239299	0.201693659	45.73629073
Turkey	2.349087	1.538024	1.178794	1.170292161	49.81902998
United Kingdom	0.328746	0.297311	0.252035	0.076711552	23.3345692
평균	0.70679			0.241595932	39.83353806

A Comparative Study on Regulatory Costs in OECD Countries

Lee, Hyukwoo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countries by expanding existing regulatory or regulatory cost analysis for countries. This research was possible because there was a model of regulatory cost estimation designed by Crain (2001). As a result, countries such as Luxembourg,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Norway have maintained the lowest per capita regulatory cost per capita between 2003 and 2013. In terms of efforts to improve regulation, Slovakia, Poland, Hungary, Mexico, Turkey, Portugal, the Czech Republic and Korea achieved higher regulatory costs than the average between 2003 and 2013, Regulation cost per capita is at the highest level, indicating that demand for regulatory improvement is high. On the other hand, in the Netherlands, Germany, Austria and Switzerland, the per capita regulatory expenditure per capita per capita in 2003 was below average, but efforts to reduce regulatory costs were also above average. In the case of Germany, especially among those countrie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2003 to 2013 has improved markedly, and this shows that the effect of relatively positive regulatory improvements is also reflected. In Greece, on the other hand, regulatory cost per capita is worsening from 6th place in 2003 to 3rd place in 2013. Despite relatively unreasonable regulations, we believe it was relatively too lazy to improve regulations. For this reason, Greece still has the lowest economic performance in Europe, and many social issues have been evaluated.

[Key Words: regulation, regulatory costs, OECD national regulation cost comparison, baseline model]